

UPDATES 법률정보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위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주요 판단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토지 소유자의 책임 합리화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

CASES 업무사례

- Anheuser-Busch InBev의 오비맥주 인수
- Tyco International의 ADT캡스 매각
- NH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아비바생명 인수
- 넥센타이어의 넥센산기 흡수합병
- 보고펀드의 에누리닷컴 인수
- KTB 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 IMM의 현대상선 LNG전용선 사업부 인수
- 하자 있는 자동차의 신차 교환청구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선고
- BGF리테일 신규 상장
- 현대커머셜 영구채 발행
- GS건설 유상증자
-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지분 인수계약 체결
- 싱가포르투자청(GIC)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매입
- 에이알에이(ARA) 그룹, 국내 부동산 리츠(REITs) 시장 진출
-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웰컴의 위치정보사업허가 업무
- 어벤저스2 국내 로케이션 업무 지원
-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 UNCITRAL 국제중재 및 해외 에너지 사업관련 국제중재 첫 승소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인의 간접공사비 청구 인용 판결

NEWS 세소식

- 세계 15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100 (2014)
- 아태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inancial Times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 Report 2014
- 자산운용 분야 최우수 로펌 선정 - AsianInvestor Korea Fund Awards 2014
-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4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 공정거래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GCR Korea Survey 2014
- 에너지/인프라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 Infrastructure Guide

공정거래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5월 12일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 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위 고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행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한 구입강제 행위 금지

- 청약 또는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신제품, 비인기 상품, 재고품 등을 일정 수량 이상 반드시 구입 또는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인건비 등을 사전에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전가하는 행위
-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인원의 파견을 강요하는 행위
- 판매업자에게 기부금, 협찬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공급중단, 또는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행위
-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행위
- 공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임대한 장비 등이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실·훼손된 경우 부당한 변상기준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행위
- 계약해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자의 일방적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
- 부당한 반품거부 또는 반품비용 전가행위
- 상품공급 또는 영업지원의 부당 정지 또는 거절하는 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삭감 행위
-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

-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업자 소속 임직원·판매원의 선임·해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영업시간·거래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 판매업자의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공급업자가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공정거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위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12년 3월 21일자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바,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심법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 공정위는 계열회사 5개사가 각종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 구매 업무 등을 다른 계열회사에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은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MRO 업무를 대행한 회사의 다른 계열회사 5개사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았으며,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계열회사 5개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 공정위는 다른 계열회사의 자금 차입 시 아무런 대가 없이 예금 및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면서 일반정상금리와 실제 적용된 금리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은 공정위가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본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사 사이의 자금거래에 적용될 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별정상금리가 아닌 일반정상금리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 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기업법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4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3년 12월 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년 3월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국문 명칭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개정안은 4개 유형(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으로 구분되어 오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 개정안은 PEF 설립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설립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전등록제를 사후 보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PEF 자산의 운용방법 개선

- 개정안은 PEF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여유자금 운용으로서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 개정안에 따르면, PEF는 (1)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할 수 없고, (2)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GP의 계열회사 또는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L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1) 영업양수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PEF가 주식매매만이 아니라 영업양수도 방식의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2) PEF의 SPC가 채무승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3) 투자대상기업 관련 부동산 투자 역시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주요 판단

작년 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및 신의칙 항변 적용 범위에 관한 후속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핵심 내용 및 의미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1나826 판결 등 다수).

그 동안 복리후생적 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면, 정기상여금도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은 최근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제한이 단체협약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실제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판결).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노사관행 성립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무자료에 근거하지 않고도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음

최근 대법원은 “(1) 통상임금이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 및 (2) 실질임금 인상률이 임금협상 당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만으로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위와 같은 판례는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수치 없이도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구체적 재무수치를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에 적극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기존 인건비의 1~2%에 지나지 않고, 통상임금 및 실질임금 추가 인상률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따라서, 아직까지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정립된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선례가 축적될 때까지 판결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신의칙 항변을 적용할 수 없음

정기상여금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근속수당, 격려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2가합23000, 2013가합3805 판결).

다만,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를 임금 항목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에 관해서는 판결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 sungwook.jung@kimchang.com

금융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 18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동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민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2010년 3월 18일)하고 시행령 발표(2013년 1월 17일)함
 - FATCA는 2014년 6월말까지 미국외 금융회사가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함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 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하여, 각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함 (2014년 3월 19일자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보고대상 계좌	개인	-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이자, 배당, 기타소득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보교환 시기		- 2015년부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	

적용대상

- 금융회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협동조합 등의 경우 보고의무 경감)
- 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
(단,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이행절차

-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함(연 1회)
- 다만,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중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2016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 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 ²⁾	
신규계좌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 시	2014년말 잔액 ³⁾ (매년말 잔액)	2015년 7월말까지 ³⁾ (이후 매년 7월말까지)	
기 존 계 좌	고액개인 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 액 100만 달러 초과	2015년 6월말까지	2014년말 잔액 ³⁾ (매년말 잔액)	2015년 7월말까지 ³⁾ (이후 매년 7월말까지)
	소액개인 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 액 5만 달러 초과 ¹⁾ 100만 달러 이하	2016년 6월말까지	2015년말 잔액 ⁴⁾ (매년말 잔액)	2016년 7월말까지 ⁴⁾
	단체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 액 25만 달러 초과			

1)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 달러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2014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4) 2015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환경

토지 소유자의 책임 합리화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소유자의 면책범위 및 책임한도의 설정을 골자로 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이 2015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2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1)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및 책임 제한수단을 두지 않은 것, (2) 토지 양수인에게 양수 시기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정화책임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개정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 정화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면책됩니다.

1996년 1월 5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양수한 경우

-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자라도, 그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었거나, 양도한 것은 그 이후이더라도 최초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이 1996년 1월 5일 이전이라면 면책됩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토지를 양수한 시점이 1996년 1월 5일 이전이라면 면책됩니다.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소유자

- 소유자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면 선의·무과실로 추정됩니다.

토지를 소유하던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나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

-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해당 토지상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는 면책되지 않는 반면(일정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는 있음), 그 시설의 부지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양오염 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1996년 1월 6일 이후에,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또는 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해주는 등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는 면책되지 않는더라도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양수·양도한 자로서 토양정화비용이 토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토양정화비용이 토지 가액 및 토지로부터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토양정화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지가상승분과 같은 반사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지가상승 분 등 토지로부터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까지는 책임을 지우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 정화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면책사유의 주장, 그에 따른 구상 범위의 확정 등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토지를 매매하려는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거래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수인(현재 토지 소유자)의 경우 양수시점에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토양오염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추정 받아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위 추정이 번복되어 정화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매수인으로서의 종전보다 더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정화책임을 이행한 경우,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의 면책사유의 존부 및 귀책 정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방송·통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

국회는 지난 2014년 5월 2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항	구체적인 개정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의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함 -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통지·신고 시한을 명시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였으며, 파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함
법정손해배상 제도	- 이용자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고,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입증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누출 등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과징금	- 개인정보 관련 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기존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의 경우 현행 과징금 상한 규정(1억원)을 삭제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문언을 수정함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 이메일을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에도 수신인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해석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중 개정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고, 적법한 업무 관행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이정운 변호사 jungun.lee@kimchang.com

기업법무

Anheuser-Busch InBev의 오비맥주 인수

2014년 4월 1일, Anheuser-Busch InBev는 그 자회사를 통하여 KKR & Co. 및 Affinity Equity Partners로부터 오비맥주 주식회사 지분 100%를 미화 58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cross-border M&A 거래이자 PEF 거래이고, 그 규모 및 복수관할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 진행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법무 및 세무 이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수인과 매도인 컨소시엄을 각각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 취득,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Tyco International의 ADT캡스 매각

2014년 5월 22일, 다국적기업 Tyco International Ltd.의 자회사 Tyco Far East Holdings Ltd.는 ADT캡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Tyco Fire & Security Services Korea Co., Ltd의 주식 100%를 Siren Investments Korea Co., Ltd.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도자인 Tyco International Ltd.를 대리하여 법률실사의 수행, 주식 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거래 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및 우리아비바생명 인수

2014년 6월 27일 농협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투자증권의 지분 37.85%, 우리아비바생명 지분 98.89% 및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농협금융지주는 본건 거래를 통해 증권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농협금융지주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금융위원회 자회사 편입승인 취득 및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넥센타이어의 넥센산기 흡수합병

2014년 4월 30일, 넥센타이어(주)는 경영효율성 증대와 기존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계열사인 (주)넥센산기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 신고 등 인허가 취득, 공시 문서 검토 및 거래종결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펀드의 에누리닷컴 인수

2014년 4월 30일, 보고펀드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9명의 주주들로부터 에누리닷컴 지분 87.81%를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보고펀드를 대리하여 법률실사의 수행,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KTB 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의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2014년 5월 27일, KTB 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는 동부건설 주식회사 및 가이아디백스제일차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KTB PE와 큐캐피탈파트너스를 대리하여 거래 구조 수립,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금융감독원의 승인 등 인허가 취득 및 거래종결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IMM의 현대상선 LNG전용선 사업부 인수

2014년 6월 30일, IMM Private Equity 및 IMM Investment는 양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와 현대상선 주식회사가 각각 80:20의 지분비율로 투자한 신설 합작법인을 통하여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LNG전용선 사업부를 영업양수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선박금융계약의 이전, 외환 관련 법령 및 세무적 처리 등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는 IMM 및 합작법인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규제 관련 자문, 인수금융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하자 있는 자동차의 신차 교환청구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최근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신차 교환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자동차 계기판이 고장이 나자 계기판을 교체하는 내용의 정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신차로 교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계기판을 교체하는 정비방법을 통하면 그 하자는 모두 치유되며, 무상보증수리 기간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무상으로 계기판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법률적인 청구원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한 종류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이었습니다. 즉, 매도인이 하자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니 매도인은 하자 있는 자동차를 반환 받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완전물(신차)로 교환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인 판매회사(딜러) 외에 판매회사에 자동차를 판매한 수입사에 대해서도 판매회사와 연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수입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회사의 위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회사는 완전물급부무를 부담하고, 수입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하여 이러한 판매회사의 의무를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사안 별로 고려하여 볼 때,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무리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단과는 달리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수입사의 보증책임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수입사가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수입사가 품질보증서에 기하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위 품질보증서의 적용대상인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사의 보증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선례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분석결과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하자는 치유 가능하며, 치유하는 데 시간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신차로 교환해 줄 경우 신차 출고 후의 자동차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소비자의 청구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선례적인 판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수입된 제품과 관련된 품질보증서의 해석과 이로 인한 책임 발생에 관하여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판단한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권

BGF리테일 신규 상장

국내 최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주식회사는 2014년 5월 7일, 신주발행 없이 구주매출방식에 따라 기존 주요주주 보유 보통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5%) 6,160,030주를 매출가액 41,000원, 매출총액 2,525억원 규모로 상장하였습니다(우리사주 조합 20% 우선배정 후 잔여 80% 일반공모).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관련 제반 법률 및 세무상 이슈 검토 및 증권신고서 검토뿐만 아니라 상장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현대커머셜 영구채 발행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4년 6월 12일 일천이백억원 규모의 영구채(만기: 30년,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를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영구채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업무뿐만 아니라 거래구조,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규제 법규의 제한여부 및 보완자본 인정여부 검토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GS건설 유상증자

GS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 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6월 12일에 총발행가액 5,520억원 상당의 보통주 20,000,00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자문하여, 거래 관련 일정, 제반 법률 및 세무상 이슈 검토, 법률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험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지분 인수계약 체결

(주)KB금융지주는 2014년 6월 27일, LIG손해보험(주)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주)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지분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KB금융지주를 대리하여 LIG손해보험에 대한 법률실사, 인수계약에 대한 자문 및 협상, 그 밖에 주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싱가포르투자청(GIC)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매입

싱가포르투자청(GIC)은 2014년 4월 4일 경기도 이천시 덕평리에 개발 중인 덕평물류센터의 부지 일부 및 신축 중인 물류시설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지 및 물류시설을 15년간 현대로지스틱스(주)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일 현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이며, 물류시설 역시 착공되기 전이라는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에이알에이(ARA) 그룹, 국내 부동산 리츠(REITs) 시장 진출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다수의 운용사들을 통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펀드 운용, 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에이알에이(ARA) 그룹은, 2013년 12월 20일 맥쿼리 그룹으로부터 맥쿼리엔피에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0%(나머지 90%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및 자산관리회사(AMC)인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 주식 10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국토교통부의 인가 및 승인을 얻어 2014년 4월 17일 해당 주식들을 모두 취득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이알에이 그룹에게 법률실사, 투자구조 검토, 주식매매 협상에서부터 주식매매계약 체결, 국토교통부의 인가 획득, 상호 변경 및 주식 양수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시아 유수의 부동산투자운용 전문그룹인 에이알에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맥쿼리리얼에스테이트코리아는 에이알에이코리아로, 맥쿼리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에이알에이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여 활동 중이며, 국내 부동산리츠 업계 및 부동산투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무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부인하고 그 주주인 프랑스 지주회사를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1)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약 30년 전에 설립되었고 50여 개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약 12년 동안 사업을 하였던 점, (3) 주식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프랑스 지주회사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점, (4)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4년 4월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리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며, 그것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 요건 중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인 쿠쿠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1)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침해 제품의 판매를 묵인해 온 점, (2) 피신청인인 리홈쿠크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특허권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정작 특허권자 자신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4) 피신청인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높아 가처분 인용 시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 리홈쿠크를 저희 사무소가 대리하였습니다.

퀄컴의 위치정보사업허가 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9일 퀄컴시디엠에이테크놀로지코리아 유한회사(“퀄컴”)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퀄컴을 대리하여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허가 절차에 관련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퀄컴은 당초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허가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급히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글로벌사업자들의 위치정보사업허가 신청 업무를 대리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퀄컴이 허가 신청 기한을 준수하여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벤져스2 국내 로케이션 업무 지원

월트디즈니 계열의 마블스튜디오는 지난 2014년 3월 30일부터 4월 14일까지 영화 어벤져스2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성공적인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위하여, 국내 로케이션을 위한 법인설립부터 각종 계약서 검토, 교통 통제를 위한 유관 기관 협의, 촬영용 통신 주파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촬영은 한국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로케이션 촬영으로서, 대부분의 법률문제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쟁점들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어벤져스2의 한국 로케이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계기로 향후 해외 영화제작사들의 국내 촬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바,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16일 이동통신가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법리 개발을 통하여 2011년 2월 18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 냈고, 최근 이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해킹하여 임의로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조회창을 생성한 것을 이유로, 이동통신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분별한 집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책임 인정의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사업자의 책임 요건인 “누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출 책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장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 합리적인 책임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UNCITRAL 국제중재 및 해외 에너지 사업관련 국제중재 첫 승소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기관중재(ad-hoc)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 A사가 해외 매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사건에서 A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사가 매도인들 소유의 회사 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으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시기관중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 특정 중재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임시기관중재였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컸고, (2) 준거법이 상대방 국가의 법률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상대방과의 중재일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현지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자문을 받아 짧은 기간 안에 전부 승소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M&A 관련 UNCITRAL 임시기관중재에서 전부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해외 에너지 사업관련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한국 C사가 해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너지 사업 관련 ICC 국제중재에서 C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C사가 D사와 체결한 에너지 관련 공동생산계약에 관한 것으로, D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D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C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고, 중재판정부는 D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국제중재 사건을 국내 로펌이 대리하여 승소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인의 간접공사비 청구 인용 판결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수급인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인 수급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가합100658 판결).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공사비 청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상반된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2) 책임감리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부적법하며, (3) 차수별 계약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수급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1)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에 따른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 이전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충분하고,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각 차수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 사건과 같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2) 책임감리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역시 적법하고,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4) 차수별 계약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인 수급인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 발주처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상반된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인 건설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유사 사건에서 건설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수급인들을 대리하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리주장을 통해 불리한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상소식

세계 150대 로펌으로 선정 - Who's Who Legal 100 (2014)

김·장 법률사무소가, 영국 법률미디어 Who's Who Legal이 최근 발표한 세계 150대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Who's Who Legal은 지난 18년간 실시한 140여개국의 lawyers/clients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Who's Who Legal 100 (2014, 3rd edition)'이라는 publication을 통해 세계 150대 로펌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우리 사무소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까지는 100대 로펌을 선정)



아태 지역 혁신 로펌 선정 - Financial Times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 & Report 2014

영국 베이스 글로벌 경제 전문지 Financial Times(FT)가 주최한 '제1회 FT Asia-Pacific Innovative Lawyers Awards'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한 자산을 담보로 한 2종류의 커버드본드 발행'건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Legal Innovation in Real Estate Financ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FT가 발행한 리서치 결과 리포트에서, 우리 사무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혁신적인 로펌("FT Law 25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 7위에 선정되었으며, "Corporate & Commercial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부문과 "Corporate Strategy - Asia-Pacific Headquartered Firms"부문에서도 우수 로펌("Highly Commended")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FT는 로펌 및 in-house counsel의 nomination 자료와 고객/전문가 인터뷰 등 일련의 리서치를 통해, 아태지역 분야별 우수 로펌 및 변호사, in-house team을 선정하여 결과를 리포트로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11일 홍콩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산운용 분야 최우수 로펌 선정 - AsianInvestor Korea Fund Awards 2014

영국 미디어그룹 Haymarket Media Limited의 계열사인 AsianInvestor가 주최한 'AsianInvestor Korea Fund Awards 2014'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자산운용 분야 최우수 로펌("Best Law Firm for Asset Management")으로 선정됨으로써 4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자산운용 분야 전문 미디어인 AsianInvestor는 2011년부터 매년 awards를 개최해서 한국 우수 자산운용사 및 투자서비스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4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

김·장 법률사무소가 세계적 인수·합병 전문 정보업체인 머저마켓(mergermarket)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M&A 리그테이블에서 국내 M&A 부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금액 기준 약 228억달러, 자문건수 기준 42건으로 국내 법률자문사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Buyouts 부문에서 자문건수 기준 1위, 금액 기준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South Korea M&A (By Volume and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22,874	42	1

Asia Pacific (ex. Japan) M&A (By Deal Count)

USD (MM)	Deal Count	Rank
3,442	11	1

공정거래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GCR Korea Survey 2014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Country Survey: Korea 2014'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Elite competition practice in Korea"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공정거래 전문그룹의 규모 및 수임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를 "한국 경쟁법 분야 선두로펌(leading the way in Korean competition law work)"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한국 선두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 Infrastructure Guide

최근 발행된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Guide' 2014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에너지/인프라 분야 한국 선두 로펌(Tier 1)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허익렬, 조영균 변호사, 신창희 미국변호사가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Guide'는 금융전문 글로벌 미디어그룹 Euromoney 계열의 출판사인 Legal Media Group이 발행하는 Energy & Infrastructure 분야 국가별 로펌 및 변호사 랭킹 가이드북입니다.

사회공헌 소식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지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8월 12일,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위원회는 재단측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반환, 조사, 현지활용 등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법률자문 및 문화재 관련 국내의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협에 세월호 성금 2억원 기탁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7월, 세월호 구조 기금에 보탬이 되고자 내부 구성원들이 자체 모금한 세월호 관련 피해 구조를 위한 성금 2억원을 대한변협 사협회에 전달했습니다.